

#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소위원회 지침

시행일 : 2019. 03. 01.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사소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등)

-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의 원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 대학원의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각 전공별·출신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채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임면 제청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승진 제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재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